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2.6.13 (수) 17:40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김봉희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2년 6월 4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5일

3. 제안 이유

-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3조)

나. 협의회 구성 및 임기(안 제4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 다만, 동 조례의 운용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함.